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일준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8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6. 17.

발 의 자 : 서일준 · 임종득 · 권영세
서천호 · 박충권 · 서범수
윤한홍 · 고동진 · 신성범
권성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,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(특례시)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,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·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려는 것임(안 제41조, 제46조).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1조제1항 중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가”를 “시장·군수·구청장이”로 한다.

제46조제1항 중 “시·도지사”를 “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1조(안전교육) ① 액화석유가 스 사업자등과 시공자 및 액화 석유가스 특정사용자(액화석유 가스를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 는 자는 제외한다)의 안전 관리 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는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자치 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지사</u> 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다)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. ② · ③ (생 략)	제41조(안전교육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장 · 군수 · 구청장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46조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 한 지원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 관, <u>시 · 도지사</u> 및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(특별자치시장 및 특별 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. ② (생 략)	제46조(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 한 지원) ① ----- --- <u>특별시장 · 광역시장 · 특별 자치시장 · 도지사 · 특별자치도 지사(이하 “시 · 도지사”라 한 다)</u> ----- ----- ----- ---.
	② (현행과 같음)